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8드단214582 손해배상(기)
원 고 갑
피 고 을
변 론 종 결 2019. 12. 17.
판 결 선 고 2020. 1.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2020.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 2/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병은 2006. 9.경 결혼식을 올리고 2006. 12. 13.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현재 미성년인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원고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함께 가족 여행을 다닐 만큼 친분이 두터웠던 피고는 2017. 9.경 ○○강좌를 수강하는 등 계기로 부쩍 가까워져 따로 연락하고 만남을 가졌고, 이후 병과 매월 3~4회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갖고 병의 지방 출장에 동행하는 등 연인사이로 지냈다.

다. 한편 병은 원고가 자신과 시택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며 2018. 8. 22.경 원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병과 시택 문제로 다툼이 있긴 하였지만 서로 많이 믿고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기에 부부 사이에 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병의 이혼 요구에 큰 충격을 받았고, 피고에게 이 문제를 상의하며 변호사 면담에 동행하기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소송에서 병의 통장을 정리하던 중 병이 2017. 9.경부터 월 3~4회 모텔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병이 대실한 모텔이 병의 직장과는 무관한 부산 △△에 있을뿐더러 피고의 집 인근 편의점, 식당 등에서 결제한 내역까지 추가 확인하자 피고와 병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였고, 병이 귀가하지 않는 날 피고의 집 앞에서 피고에게 연락을 취하였다가 피고가 거짓말로 둘러대는 것을 알았다.

바. 원고는 병과 피고의 행방을 뒤쫓던 중 2018. 10. 15. 병이 이전에도 이용했던 ◇◇ 소재 모텔에서 병과 피고가 함께 나오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사. 원고는 2018. 11.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아. 원고는 병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인 병의 이혼 청구가 이유 없고 이혼할 생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으나, 양육비 미지급, 거주지 아파트 대출이자 독촉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2018.10. 23. 위 소송에서 '이혼하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원고는 병으로부터 거주지 부동산 중 1/2 지분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병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대출원리금은 원고가 면책적으로 인수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오랜 친구이므로 병에게 배우자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병을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며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병의 지방 출장에 동행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병과 어떠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2018. 9.경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와 병 사이를 중재할 생각으로 몇 차례 병을 만나면서 병에게 연민의 감정을 갖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2018. 10. 15.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이라며 이는 원고와 병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다투나, 피고와 병의 모텔 결재내역, 카드사용 내역, 통화내역, 피고가 뜬금없이 원고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2018. 10. 15.경 피고와 병이 자연스럽게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고와 병의 부정한 관계는 2017. 9.경부터 이어져 온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그 이후의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병이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달리 그 무렵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병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원고와 병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원고와 병의 이혼소송 합의사항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

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8. 11.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정